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 련 1301
----------	-------------

제안연월일 : 2020년 6월 18일

제 안 자 : 보건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되 기존의 장기기증의 날을 존치하면서 생명나눔 주간을 운영하는 것으로 수정함.

2. 주요내용

- 가.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하여 생명나눔 주간을 운영하도록 수정함(안 제10조 수정)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의 "매년"를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하고,"로 한다.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10조(장기기증 접수 창구 설치) ①·② (생략)</p> <p>③ 시장은 서울시민 들의 장기등 기증활 동을 장려하기 위하 여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 정·운영한다.</p> <p style="margin-top: 20px;"><u><신 설></u></p>	<p>제10조(장기기증 접수 창구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시장은 장기등 기증자의 이웃사랑 과 희생정신을 기리 고, 시민들의 생명나 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매년 9월 중 두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을 생명나눔 주간으로 운영한다.</p> <p>④ 시장은 생명나눔 주간의 취지에 적합 한 기념행사를 실시 할 수 있다.</p>	<p>제10조(장기기증 접수 창구 설치) ①·② (개정안과 같음)</p> <p>③ 시장은 장기등 기증자의 이웃사랑 과 희생정신을 기리 고, 시민들의 생명나 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매년 9월 9 일을 장기기증의 날 로 지정하고, 9월 중 두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을 생명나눔 주간으로 운영한다.</p> <p>④ (개정안과 같음)</p>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장기등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시민들의 생명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하고, 9월 중 두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을 생명나눔 주간으로 운영한다.
- ④ 시장은 생명나눔 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p>제10조(장기기증 접수창구 설치)</p> <p>①·② (생략)</p> <p>③ 시장은 서울시민들의 장기등 기증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u>장기기증의 날로 지정·운영한다.</u></p> <p><u><신설></u></p>	<p>제10조(장기기증 접수창구 설치)</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시장은 장기등 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시민들의 생명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하고, 9월 중 두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을 생명나눔 주간으로 운영한다.</u></p> <p>④ <u>시장은 생명나눔 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u></p>